

202.105호

행정명령

**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
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**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 명령(Executive Order)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따라서 오늘 저 **ANDREW M. CUOMO** 뉴욕주 주지사는 주 비상시 모든 기관의 법규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,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그러한 법규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, 규정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대체, 개정 또는 다른 방식으로 만료되지 않는 한 행정명령 202호 및 행정명령 202호에 대한 후속 지침에 의한 법률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2021년 5월 27일까지 30일간 지속합니다.

또한, 비상사태 동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어떠한 지침도 수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2021년 법(Laws of 2021) 71장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2021년법 71장과 일치하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수정 및 연장합니다.

- 만 2세 이상의 개인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또는 천으로 얼굴을 덮을 때 코나 입을 가리도록 요구한 행정명령 202.17호에 포함되었으며 연장된 지침은, 이로써 일련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개인의 경우 밀집된 환경 및 시설 외의 야외에서 코와 입을 가리도록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 및 수정됩니다.

또한, 다음 지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.

- 특정 백신 제공자가 예방 접종에 다음 그룹을 우선하도록 요구한 행정명령 202.97호 및 202.99호가 수정한 행정명령 202.91호에 포함된 지침: (1) 접종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, (2) P-12 학교(공립 또는 사립) 교사, 대체 교사 또는 학생 교사, (3) 기저질환 보유자.
- 우선 순위 그룹의 구성원으로 인증되지 않은 개인에게 백신을 투여하거나 개인이 우선 순위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달리 알고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경우, 투여량당 최대 1백만 달러의 민사 처벌 및/또는 주정부 발행 면허 취소에 처할 수 있다고 지시한 행정명령 202.86호에 포함된 지침.

2021년 4월 2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
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